

○ 징수유예기간 : 3개월

○ 징수유예된 납부기한 : 2021. 3. 2.까지

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직권 징수유예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담당부서 :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(044)204-3252, 3253

## ●소방청공고제2020-158호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, 입법예고(2020.7.15.~8.24.)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5일

소 방 청 장

###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전산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을 개선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(안 제19조제1항)

- 1)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서 서식의 개선이 필요함.
- 2) 이에 복잡한 점검결과 항목을 통일하여 간소화하고 점검항목을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점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함.

나.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(안 제19조제2항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
- 전자우편 : sihong74@korea.kr
- 팩스 : 044-205-8915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(전화 044-205-7522, 팩스 044-205-89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●소방청공고제2020-160호
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5일

소 방 청 장

###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영국 고층아파트 화재(“17. 7. / 사망 72, 부상 74)를 계기로 초고층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(“17. 2. / 사망 4, 부상 14),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(“20. 10./ 부상 95)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.

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종전의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다시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“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” 정비, 안전점검 규정 체계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적용기준 마련 및 법 용어 정의

- 1)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거리, 바닥면적, 개구부, 계단폭)을 갖춘 경우 제외조항 신설(안 제2조제2호)
- 2) 사전재난영향평가에 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제9호 신설)

나.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

- 1) “사전재난영향성검토”→“사전재난영향평가”로 명칭 변경(안 제6조제1항)
- 2)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개편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원회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요청함.(안 제6조제2항·제4항·제5항)
- 3)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재평가 근거 마련, 평가내용 재정비 등(안 제6조제6항)

다.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비하고, 관리주체의 법정계획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법정계획서의 범위 확대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

라.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근거 마련 및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금 1,000만원 부과(안 제26조의 2 신설, 안 제31조제3호 신설) \* (현행)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미적합에 따른 조치명령만 규정

마.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,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

- 1)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(안 제12조제3항, 제32조제1호의4 신설)